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105 호 2018. 2. 1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14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1호[도로명주소 고시] 5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69호[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]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72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73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]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78호[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행정예고] 20

안
내

-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
회
람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- 14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문화체육과)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인공구조물 설치(인공잔디 및 훈스 설치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치 : 명촌동 774-3번지
나. 면적 : 650m²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2018. 1. 31. ~ 2022. 5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0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(진장동) 외 2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2. 1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시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0B 12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	2018-02-01	건축물 멀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B 1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21	2018-02-01	건축물 멀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5-4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6	2018-02-01	건축물 멀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- 2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15(진장동)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 (별지참조)
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2. 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충전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령촌지구 808 12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 2018-02-01	옛 지명이니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.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률류단지 5B 5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15(진장동) 2018-02-01	진장유통로에서 부기한 도로로 진장유통로에 연계성을 빙여 2016-07-28	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8 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21 2018-02-01	옛 지명이며 경제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두로점을 부여하였습니다.	2004-12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9B 2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길 26 2018-02-01	옛 지명이며 경제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출신시민이던 '구나' 속수한 이 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.	2004-12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5-4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6 2018-02-01	네로부터 양정동은 양정, 양도, 청년마을로 각각 -나비- 놀리었던 손으로 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.	2004-01-05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8-169호

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
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및 제37조(영업허가 등)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81조(청문)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을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(공고)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: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따른 영업소 폐쇄

2. 공고기간: 2018.2.1.~2018.2.18.(14일 이상)

3. 위반업소내역

업종 (신고번호)	업소명	영업소소재지	대표자	위반사항
일반음식점 (제2015 -0254007호)	우령각시 호계점	울산 북구 호계10길 15, 지상1층 (호계동)	천*선	영업시설물 전부 철거
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영업시설물 전부멸실

5. 법적근거: 식품위생법 제36조(시설기준), 제37조(영업허가 등) 및 제75조(허가취소 등)

6. 청문일시 및 장소: 2018. 2. 19.(14:00)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(4층)

7. 유의사항: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
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
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8. 문의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(☎052-241-7783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72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1. 개정이유**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이 2017.12.26. 일부개정됨에 따라,
-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
- 나.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“20만원 이하”로 확대(안 제15조)
 - 10만원 이하 ⇒ 20만원 이하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115조 제1항**4. 개정조례안 : 붙임**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: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전자메일

다. 제출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세무과장)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/ 우편번호 44248
- 전화 : (052)241-7521, 팩스 : (052)241-7509
- 전자메일(E-mail) : back7371@korea.kr

6. 기타 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참조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10만원 이하”를 “20만원 이하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재산세의 납기) 법 제115 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<u>10만원 이하인</u>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제15조(재산세의 납기) ----- ----- ----- ----- 20만원 이하 ----- ----- -----. -----.

관계법령**□ 「지방세법」**

제115조(납기)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1.1., 2017.12.26.>

1. 토지: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 2. 건축물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 3. 주택: 해당 연도에 부과·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. 다만, 해당 연도에 부과 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4. 선박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 5. 항공기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,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의 견 제 출 서

조례명	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
	주 소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17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1. 개정이유**

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2017.12.26. 일부개정됨에 따라,
-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
- 나.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수령 방식을 대신하여,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변경(안 제6조)
 - 세액 공제액 : 고지서 1장당 150원
 -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2**4. 개정조례안 : 붙임**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전자메일

다. 제출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세무과장)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/ 우편번호 44248
- 전화 : (052)241-7521, 팩스 : (052)241-7509
- 전자메일(E-mail) : back7371@korea.kr

6. 기타 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참조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의 제목 “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를 “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”을 “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”를 “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-----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**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**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송달 방식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이체 방식"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12.27., 2017.12.26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의 견 제 출 서

조례명	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
	주 소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- 178호

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행정예고

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내용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 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사업명 :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 설치
2. 시행청 :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
3. 행정예고 내용 :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 설치 장소

순 번	설 치 장 소	설치지번	비 고
1	농소운동장	창평동 391-1번지	
2	양정생활 체육공원	양정동 503-1번지	
3	효문운동장	연암동 265-39번지	
4	달천운동장	달천동 75-1번지	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1. 31. ~ 2. 20.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-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 그 이유)
 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 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 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 - 우 편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문화체육과
 - 전 화 : 052) 241 - 7343
 - F A X : 052) 241 - 7339
- 마.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【붙임】

의 견 서

사 업 명	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 화 번 호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

상안테니스장 일원 CCTV설치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